

[스마트항만물류지원센터 공고 제2024 - 4호]

울산항만공사×울산과학기술원
스마트 해상물류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울산과학기술원에서는 울산항만공사와 함께 스마트 해상물류 분야의 개방형 혁신에 기여할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4년도 스마트 해상물류 오픈이노베이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5월 27일

울산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1 사업 및 모집개요

- ☐ 사업명: 스마트 해상물류 오픈이노베이션
- ☐ 사업목적: 해상물류 분야 창업기업이 새로운 사업 협력 기회 및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울산항만공사와 협업하여 혁신과제를 발굴 및 사업화를 추진하여 양방향 기술혁신을 지향
- ☐ 모집대상
 - 모집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력 7년 이내 기업
 -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업력 10년 이내
- ☐ 모집규모: 3개사 이내
- ☐ 지원금액: 기업 당 최대 40,000천원 이내(부가세 별도)
-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4~5개월
 - ※ 지원기간은 최종 선발 후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내용: 울산항 스마트화 주요과제에 따른 항만 신기술 적용 PoC 협업과제

2

신청자격 및 모집분야

□ 신청대상(필수)

- 모집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력 7년 이내 기업
-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업력 10년 이내

[참고 1] [초격차 10대 기술분야]

No	기술분야	기술예시
1	시스템반도체	· 팹리스, IP, 디자인하우스, OSAT
2	바이오헬스	· 신약 개발 관련 플랫폼, 소재 등 ·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3	미래모빌리티	· 자율주행, 개인이동수단 등 · 배터리, 패키징, 충전 기술 등
4	친환경·에너지	· 에너지, CCUS, 이차전지, 효율화 시스템 등
5	로봇	·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시스템 등
6	AI·빅데이터	· AI 적용 기술·제품, 빅데이터 수집·활용 등
7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5G·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8	우주·항공·해양	· 위성, 발사체, 드론, UAV, 통신기술 등 · 차세대 선박, 해양장비, 해양안전 등
9	차세대 원전	· 차세대 원자로, 원전 기술·부품, 안전기술 등
10	양자기술	·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등

□ 모집분야: 울산항 스마트화 주요과제에 따른 항만 신기술 적용 PoC 협업과제

No	모집 분야	과제내용
1	신기술 활용 항만운영	드론을 활용한 울산항 혁신 서비스 (배송, 점검, 안전, 정찰) 등
2	항만물류 디지털 플랫폼	울산항 최적화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 등
3	스마트 항만안전	항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 기술(AI, IoT, 빅 데이터) 적용 등
4	지능형 항만 인프라	유해가스 지능형 감지 전자코(electronic nose) 실증 등
5	환경&에너지	친환경 항만구축 및 운영 항만 배터리팩 및 배터리관리 시스템 실증 등
6	자유주제	울산항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모델이 명확하고 실증이 가능한 주제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업당 4천만원 이내 사업화를 위한 PoC(Proof of Concept) 자금 지원
- 세부내용(※ 기계 장치 및 설비 구입 불가)

비목	비목 정의
인건비	• 창업기업 등 소속 지원이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전체 사업비의 20% 이하로 구성)
재료비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상의 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관련 비용 (※ 협약 기간 내 출원 완료 건만 인정)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등) (※ 협약 기간 내 비용만 인정, 해외 전시 박람회 등 불가)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이 PoC 검증과 관련된 아이템 관련 마케팅, 홍보 비용
유의사항	•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세는 기업에서 부담해야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문의처

□ 모집기간: 2024. 5. 27.(월) ~ 2024. 6. 11.(화) 14:00까지

- 공 고 처: 실무형해상물류일자리 지원사업 홈페이지 및 K-스타트업 홈페이지 등
- 접수방법: 공고처 홈페이지(공지사항) 내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 접수 mjkim822@unist.ac.kr](mailto:mjkim822@unist.ac.kr)

□ 관련문의: 스마트항만물류지원센터 052-217-2797

□ 제출서류

구분	순번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신청서	[서식 1]
	2	사업계획서	[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3]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4]
	5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5]
	6	과제 참여 동의서	[서식 6]
	7	PoC 지원금 중복지원 검토 확인서	[서식 7]
	8	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 1
	9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
	10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분, 말소사항 포함
	11	국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12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13	재무제표증명원	최근 3년(2021, 2022, 2023) 공고일 이후 발급
	14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 명부	23년~24년 사업신청일 기준 (입퇴사자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기타	15	(증빙자료 예시) 기업 IR 자료, 기업 소개자료, 이노비즈, 특허(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증빙서류 등	

5

선정평가 및 추진일정

□ 평가절차: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선정

신청서류 제출	요건검토	선정평가		심의	최종선정
신청서류 취합·제출	제출서류 검토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평가결과 심의·의결	최종선정* (3개사 선발)
5. 27.~6. 11.	6.12.~6.13.	6.14.(예정)	6월 4주	6월 4주/7월 1주	6월 4주/7월 1주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서류평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
 - 오프라인으로 개최
 - 모집 분야의 해결방안 및 개발계획, 보유기술, 협업 및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타당성	모집분야 해결방안 및 개발 계획의 부합성
우수성	보유 기술 및 BM의 우수성
과제 구체성	결과물(산출물) 개발 계획의 구체성
협업 역량	울산항만공사-울산과학기술원 참여기업 간 협업 및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인적 역량	수행을 위한 인력 구성 및 대표자 역량

□ 최종선정: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을 고려하여 사업비는 차등 배정 예정

6

선정제외 대상

□ 선정 제외 대상

-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도용하거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주관기관(울산항만공사) 및 수행기관(울산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7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센터의 사업 참여중인 기업의 경우, 중복 참여 불가
- 모든 자격조건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사실확인 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신청 이후 별도의 계획, 증빙서류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의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발표평가 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발표 및 대응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불참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자가 발표를 할 수 없을경우, 사전 협의 필요)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 가능
-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관련 유의사항

-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지원사업비 환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기관이 취하는 연락에 선정자가 응하지 않는 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지원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 동 사업의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최종 선발이 완료된 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항만물류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협약기간 내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 중단(사업비 회수) 등 제재조치 가능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금 집행 관리를 위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전용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음
- 협약 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창업 지원금 사용실적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